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13.2.12., 2019.5.15.>

교원창업 협약서(안)

부경대학교 총장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교원창업자 공간정보시스템공학(부)과 교수 배상훈 (이하 "을"이라 한다)(기업명 : SAM)은(는) 창업과 관련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(창업대상 기술)

"을"의 창업대상 기술은 정밀도로지도 및 고안전 자율주행기술 로 한다.

제 2조 (대학 투입분)

- ① "갑"이 "을"에게 투입하는 시설, 비품, 연구기자재, 인력, 지식재산권, 자금은 붙임의 목록과 같다.
- ② "갑"은 ①항에 의한 대학 투입분이 효율적으로 "을"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3조 (대학발전기금 출연)

- ① "을"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주식 또는 대상회사의 경상이익중일부를 대학발전기금으로서 "갑"에게 출연한다.
- 1. 출연주식 또는 기부금
 - 출연주식: 대상회사가 등록 직후에 발행한 총발행 주식중 등록 당시
 "을"이 대상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주식수의 5%이상에 해당하는 주식
 (이하 대상주식)
 - 기 부 금 :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한도액

경상이익	비율	한도액	비고
3억미만	4%	최대 900만원	
3억이상 - 10억미만	3%	최대 1,500만원	
10억이상	1.5%	최소 1,500만원	

- ※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,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.
- 2. 출연시기 결정 :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 개시일 및 결산일로부터 1개월을 초 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"갑"과 "을"이 상호 협의하는 일자로 결정한다.
- ② 대학발전기금 출연전 대상회사가 사정에 따라 제3자에게 인수되거나 흡수합 병 되었을 경우 "을"이 대상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주식수의 계산은 인수, 합 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

제 4조 (업무공백의 보완)

"을"은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업무공백이 발생 시 "을"의 비용으로 인력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.

제 5조 (기타사항)

- ① "갑"과 "을"은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②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법령에 따라 "갑" 과 "을"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6조(해석)
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, "갑" 과 "을"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별첨 : 대학투입분 내역 1부.

2020년 8월 11일

성 명 : 부경대학교 총장 김 영 섭 (인) (갑) 주 소 :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

성 명 : 배 상 훈 연 소속 : 공간정보시스템공학부(과) 직급 : 학장] (을) 주 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환경연구동 605호